

『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16. 11. 11.(월)
- 나. 제출 자 : 김경환 의원 외 5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11. 16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11. 21.(화)

2. 제안이유

-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에 따른 2017년도 월정수당 금액변경과,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.

3. 주요내용

- 의정활동비(월정수당) 금액 변경 (안 제2조)
 - ▶ (현재) 월2,242,500원 ⇒ (변경) 월2,310,000원
-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 마련 (안 제3조의2 신설)
 - ▶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미지급

4. 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